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반론보도

사례 01

2022경기조정14·15·16/17·18·1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토지 인허가 절차상의 부정청탁 의혹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문 게재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건축설계업자 A 씨가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청탁을 했고, 관련 심의가 부결되자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이후 허가를 목적으로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 🗣️ 신청이유

신청인은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적이 없음에도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인 허위 제보만을 근거로 보도해 심각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함께 2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 과정에서 다수의 제보자 진술과 입증자료 등을 확보해 조정대상보도를 작성했기에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신청인은 심리 과정에서 인터넷 신문의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중재부는 반론보도를 게재와 피신청인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했다.

## 조정대상보도

○○ △△시의 한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설계업자가 관련 부서에 수억 원의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가 부결되자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방지 기자까지 나서 허가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사무소장 A 씨가 △△시 건축과에 방문한 건 지난해 10월.

□□면 ◇◇리 토지가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 씨가 관련 부서 직원에게 재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날 A 씨는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직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략]**

△△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횡포를 부린 것인데, 이후 A 씨가 허가를 목적으로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단독] △△ □□ 개발허가에 지방 일간지 기자 ‘로비’ 의혹」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설계업자 A씨가 관련 부서에 수억 원의 부정청탁을 했고 담당 공무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허가를 목적으로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토지 인허가 과정에서 수억 원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허가를 목적으로 지방 일간지 기자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12시간 동안은 뉴스면 주요뉴스목록 상위 10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반론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반론보도문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일(화) 09:00까지 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검색을 차단하고 향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반론보도 사례 02 < 2022서울조정162·163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 일부 열람차단)

자동차 기업 인수를 추진 중인 A 회사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기사에 인용한 사외이사와의 통화내용과 관련해 반론보도문 게재와 함께 해당 표현을 열람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자동차 기업의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A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인 B 회사를 140억 원(40억 원은 회삿돈, 100억 원은 대여금)에 인수한 후, A 회사의 현 대표 및 총괄 대표 등을 B 회사의 사내이사로, 은행 출신 윤 모 씨를 B 회사의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B 회사가 A 회사의 주식을 5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는 '셀프투자'를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사외이사인 윤 모 씨는 피신청인과의 통화에서 "나는 이름만 올렸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언급을 했다고 덧붙였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취재기자에게 "나는 이름만 올렸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B 회사의 사외이사인 본인이 회사 중요 사안을 의결하면서 상정안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경영진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A 회사 주식 매입에 찬성한 것처럼 왜곡 보도해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정정보도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기자가 신청인과 통화한 사실에 기초해 기사를 작성하였다면서도,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해 조정대상보도 본문에 언급된 신청인과의 통화내용 부분을 삭제하거나, 반론보도를 게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인은 인터넷신문 외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동일 보도가 게재된 만큼 인터넷신문과 지면에 모두 반론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재부는 보도문안에 대한 당사자 간 의견 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신청인의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함이 적절해 보인다고 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모두에 반론보도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상장회사 ㄱ이 ㄴ기업에 회삿돈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상장사 ㄱ의 이사회엔 ㄴ의 대주주와 임원이 이사로 참여한다. 사실상의 ‘셀프 투자’인 셈이다. **[중략]** <○○○>가 A 회사 쪽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B 회사’(옛 △△△△△)의 자금 거래를 추적한 결과다.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문제는 B 회사의 A 회사 투자 결정을 내린 게 A 회사 쪽 인사들이라는 점이다. □□□□□□□□는 지난 6월 B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직후 임시주총을 열어 B회사의 이사를 모두 교체했다. 강◇◇ A 회사 대표와 이☆☆ A 회사 총괄 대표, 한 아무개 전 ▽▽ 자문역 등이 B회사의 새 사내이사로, ◎◎은행 출신 윤 아무개 씨가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중략]**

B 회사 쪽은 A 회사 주식을 고가에 인수한 게 “전기차 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이사회 출석 이사 전원이 상호 신중한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라고 공시했다. **[후략]**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차단(삭제)된 부분은 수록하지 않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려왔습니다] 「[단독]<◁◁◁ 인수추진> A 회사 쪽, 상장사 40억 넣고 500억 빼갔다」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조정대상보도에서 B 회사의 윤 아무개 B 회사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이름만 올렸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사외이사는 “회사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은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경제>섹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 시점부터 최초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해당 보도문을 언론사 DB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일간신문 2면(지면)에도 반론보도를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 일부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내용 중 < …… > 문장을 삭제한다.

**반론보도 사례 03 < 2022서울조정891·892 정정·반론청구**

<b>신청인 유형</b>	지방자치단체
<b>피신청인 매체유형</b>	인터넷신문
<b>처리결과</b>	조정성립(반론보도)

지방자치단체의 업체 보조금 과다 지급 의혹 보도와 관련, 언론사가 조정대상보도를 자체 수정하였으나, 보조금 지급 경위에 대한 반론보도문을 추가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과거 평균 대비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분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채 자체 계산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업체는 친인척을 대거 고용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4년간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급한 보조금 지급액은 2019년 104억 원, 2020년 156.9억 원, 2021년 162억 원, 2022년 예산 1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증액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전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를 반영해 연간 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용역 소요 기간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간을 넘어서는바 추경 과정 중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시는 과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을 실시해 해당 업체 임원의 급여를 두 차례 조정·삭감한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잘못 보도해 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신청사건이 접수된 이후 최근 4년간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관한 본문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으므로, 정정보도 게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당시로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양 측이 반론보도 게재로 문안을 협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의혹의 핵심은 ○○ 시내버스업체인 (주)△△△△△에 과도한 재정지원 보조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2019년 87억 5900만 원이었던 보조금은 2020년 8억 정도 증액한 95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1, 2차 추경을 통해 55억 7500만 원, 10억 원이 각각 추가로 지급됐다. 보조금 총액은 161억 38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73억 7900만 원 늘어났다.

앞서 ○○시는 2015년 75억 원, 2016년 70억 원, 2017년 73억 원, 2018년 85억 원을 업체에 지급한 바 있다. 과거 5년 평균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 액수가 보조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2020년 급격히 보조금을 상승시킨 뒤 지난해에는 119억 9천만 원, 올해는 96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며 예년 수준으로 보상 액수를 점차적으로 인하였다. **[중략]**

보조금 지급은 매년 외부 용역을 토대로 시내버스 운영의 손익을 분석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0년에 추경을 통해 추가 지급된 약 65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분이 반영됐다고 한다. 그러나 추경 과정에선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시청이 자체 계산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더 의문스러운 점은 보조금 증액과 함께 해당 업체의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주)새천년미소는 2019년 3월 A 씨가 인수했는데, 그다음 달부터 대표이사과 감사 급여가 인상됐고 같은 해 9월에는 임원들의 급여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 입수한 (주)△△△△△ 임원 급여 인상 현황에 따르면 A씨는 한 달 기본급 13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무이사이자 사내이사인 B씨의 기본급은 48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무려 212% 증가했다. 감사인 C씨의 경우 23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108% 올랐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과다 지급 의혹…> 관련

**본문내용:** 본보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시가 시내버스업체에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전년에 비하여 2배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급한 보조금 액수는 2019년 104억원, 2020년 156.9억원, 2021년 162억원, 2022년 예산 124.8억 원이며, 2020년부터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시는 추가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해 연간 원가를 산정하고 있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에 소요되는 기간(2개월 내지 4개월)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요되는 기간(약 1개월)의 불일치로 추경 과정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한 2020년 9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두 차례 조정을 통하여



A씨의 한 달 기본급을 1500만 원으로, B씨의 기본급을 700만 원으로, C씨의 급여를 220만 원으로 삭감하였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사회>섹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사회>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반론보도문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반론보도

사례 04

2022서울조정1210·1211·1212, 1213·1214·1215

##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기사수정, 동영상 플랫폼 조치)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의 불법 채혈행위가 있었다는 방송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함께 병원 건물 전경을 모자이크 처리하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의료법 상 채혈과 같은 의료 행위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한 치과의원에서 의사의 지시로 치과위생사들이 채혈을 해왔고, 2년간 피해자가 거의 1천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병원 측이 문제제기를 계속 묵살해왔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채혈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한 시점부터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는 중단됐고, 임상병리사 역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적법하게 채혈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채혈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왜곡보도하면서 ‘피해자가 1천 명 정도에 이른다’는 등 제보자의 편향된 진술과 치과의원 건물 전경을 그대로 방송해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의 삭제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치과위생사들의 불법 채혈 문제를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취재했고, 방송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진실성이 인정되는 만큼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제보자의 문제제기가 있는 이후로 병원에서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를 중단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론보도를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 병원에서 부적절한 채혈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조정대상보도에서 피해자가 1천 명에 이른다고 언급하거나 치과의원 전경을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한 부분은 피해구제가 필요해 보임을

지적하며, 반론보도를 게재하면서 치과의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되, 피신청인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도 동일하게 조치할 것을 권고했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치과의원 전경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현행법상 환자의 피를 뽑는 것은 의료행위라서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로 치과위생사들이 채혈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와서 경찰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중략]

A 병원은 임플란트 시술 중 뼈 이식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의사의 시술 보조와 스케일링, 치아 본뜨기 등을 맡는 치위생사들에게 채혈을 시켰다고 직원들은 이야기합니다. [전 직원 : 한 2년 동안은 거의 한 1천 명 정도 피해자들이 있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저희 이야기를 묵살했고...]

의료법상 채혈 같은 의료 행위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무자격 채혈 강요해 서로에게 연습>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보도 대상 치과의원이 계속적인 직원의 문제제기를 묵살하였고, 의사나 간호사만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직원의 문제제기가 있는 이후 치과위생사의 채혈행위를 중단하고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직접 채혈행위를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2년간 1,000명에 이른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면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 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들은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 기사 수정사항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영상 중 신청인 치과의원 (△△△△△△△△) 전경 사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강하게 모자이크 처리한다.

##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들은 <□□□ 뉴스>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영상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반론보도 사례 05** 2022충북조정14·15·16/17·18·19**각 정정·반론·손배청구****신청인 유형** 1. 단체, 2. 개인**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주택조합장 선출 과정에서의 부정 선거 의혹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 하단 설명란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A 씨가 지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올 예정이었던 경쟁자 B 씨를 금품으로 매수한 뒤 단독 출마해 조합장으로 선출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1. 단체는 B 씨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 임원 피선출권이 없으며, 신청인 2.(A 씨)가 B 씨에게 지급을 약속한 금원은 과거 조합이 미지급한 조합원 모집 수수료일 뿐 조합장 선거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허위 보도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방송, 방송사 홈페이지 및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정정 및 방송보도와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보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조합원 가입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입수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보도했고, 대립 당사자의 엇갈린 주장을 균형감 있게 보도했기에 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조정대상보도의 취재과정, 신청인들과 제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반론보도하되, 피신청인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 하단 설명란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시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나와 논란입니다.

현 조합장이 사전에 경쟁자를 금품으로 매수해 단독 출마했고, 결국 선출됐다는 건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략]**

현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올 예정이었던 경쟁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조합장 선거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는 건데 이 같은 내용은 전 조합 소속 임직원인 B씨가 조합원들에게 양심선언을 한다며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특히 현 조합장의 부정 청탁 행위를 주장하는 B씨는 “그로부터 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기로 했었다”고 강조하며 부정선거에 대해 관여했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이들 간의 법적 공방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금품 제공 약속’ vs ‘사실 무근’...지역주택 조합장 선거 논란」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나와 논란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 측은 “조합 임원의 피선출권은 조합원에 한하며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이 아닌 B씨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사람이고, 조합장 A씨가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B씨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방송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영상 하단 설명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반론보도 사례 06 < 2022서울조정1601, 1602 각 정정청구**

<b>신청인 유형</b>	단체(노동조합)
<b>피신청인 매체유형</b>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b>처리결과</b>	조정성립(반론보도)

논평 보도와 관련, 의견 표명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을 갖게 되어 특정 정당과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할 길이 열린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이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을 갖는다고 법률 개정안에 명시되거나 특정 정당과 손잡고 공영방송이나 언론 장악을 꾀한 사실도 없음에도, 신청인 노동조합이 언론 관련 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해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가 논평에 해당해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내용을 단순한 의견표명으로만 보기에선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의견표명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권고했고, 보도문의 길이 및 게재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당이 새롭게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과는 전혀 다르다. 이사회를 25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운영위원 25명 중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당 몫 4명을 포함해 8명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한 듯 보이지만 전혀 아니다. 나머지 17명의 추천권을 대부분 좌파 △△노조가 갖도록 설계해 ○○당이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노조와 손잡고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중략]**

시청자위원회도 3명을 추천하는데 정부가 2018년 노사 합의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구성하도록 권고한 바 있어 여기에도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략]** 법이 통과되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될 단체들이 입법을 방해할 경우 “강성 노조의 참맛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달 중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좌파 진영의 ‘반지성적’인 언론 장악 꿈수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① (일간신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 관련, 본보는 공영방송 운영위원 17명 추천권을 대부분 △△노조가 갖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로 논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도, 공영방송 장악을 꾀한 바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반론보도문 ② (인터넷신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5월 19일자 [오늘과내일] ○○당의 ‘□□□·◇◇◇ 영구장악법’ 꿈수” 관련

**본문내용:** 조정대상보도 관련, 본보는 공영방송 운영위원 17명 추천권을 대부분 △△노조가 갖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로 논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도, 공영방송 장악을 꾀한 바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일간신문 <피플&투데이>면에 반론보도문 ①을 게재하되, 보도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 본문활자와 같게 하고, “[반론보도]” 부분은 볼드 처리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오피니언>최신기사>섹션에 반론보도문 ②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오피니언>최신기사>섹션 기사목록(상단 3번째 이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②를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조치 사항을 전송한다.



## 반론보도 사례 07 < 2022서울조정1683·1684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조정대상보도 영상이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만 남아 있어 해당 유튜브 채널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학교 인근 유해업소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라이더 카페를 리얼돌체험방·성인용품점 등과 함께 방송에 내보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 중인 카페를 리얼돌체험방·성인용품점 등과 함께 엮어 방송에 내보내 일반 음식점인 신청인 카페가 마치 유해시설에 해당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고 카페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학부모, 주민 등의 제보 접수 후 현장 취재를 거쳐 보도했으며, 조정대상보도에서 라이더 카페의 상호가 노출되거나 특정되지 않도록 흐림 처리했고, 실제로 라이더 카페 관련 다수의 민원 제기 및 반대운동이 있었던바 보도의 진실성,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도록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으로 보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심리 당시 조정대상보도물이 피신청인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만 남아있음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기 카페가 보이는데요?  
지금 도착해서 보니까 1분 넘게 걸렸습니다. 1분 9초. **[중략]**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성인용품점은 초등학교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데다 성인용품점 인근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이라든가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며 충분히 호기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더들이 이용하는 카페 사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카페 주변에 주유소가 있고, 또 주유소 인근에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들이 밀집해 있었는데요. 통학로였죠. 그래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학교 앞 인도에 펜스가 설치돼 있지만, 과거에는 펜스가 없어서 오토바이가 초등학교 앞 인도까지 진입해서 아찔한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알려왔습니다] “학교 인근 유해업소 근절해법”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구 한 학교 근처 카페와 관련해 생긴 논란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카페 운영자는 “유해업소인 성인용품점과 함께 보도되어 유해업소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본 카페는 라이더 전용 카페가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로서 유해시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 △△△△△>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설명란 가장 윗부분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되도록 한다.



## 반론보도 사례 08 < 2022서울조정1832, 2022서울조정1957(병합) 각 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공공기관장)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공공기관장의 부정 채용 청탁 의혹 등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4건의 조정대상보도 영상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기관장 취임 전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강요했고, 과거 구청 재직 시절 청년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인적사항이 담긴 리스트를 작성해 직원에게 전달하며 채용인원의 80%를 뽑으라고 부정 청탁한 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은 기관의 신규문화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당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단순히 의견을 물었을 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과거 청년일자리사업의 지원자 미달 사태를 우려해 자치구 내 대학교로부터 지원자 추천을 받아 일자리를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한 사실이 있으나 부정하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은 없음에도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편파 보도로 인해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취재원 인터뷰와 통화 내용, 근거자료를 확보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반론 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반론보도 게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증재부는 보도문안을 협의해 반론보도를 하되, 피신청인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동영상 하단 설명란과 댓글란에도 반론보도문으로 이어지는 링크를 고정 게시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① 이○○ △△문화재단 사장이 직원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재단 노조는 이 사장이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 □□□□센터 게시판에 붙은 노보입니다.

현 △△문화재단 이○○ 사장이 본부장 재직 당시 직원에게 정당의 지구당 전적 신청하는 방법과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지부 □□□□센터 노조는 이○○ 사장이 전적 신청 외에도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확인된 직원만 8명에서 10명.

노조는 이○○ 사장이 본부장이었던 지난해 8월 개별적으로 불러내거나 SNS를 통해 ☆☆☆☆☆☆ 가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략]**

② △△문화재단 청년 일자리 사업 채용 과정에 부정 청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채용 전에 인적사항이 담긴 리스트가 있었고, 실제로 채용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행안부 지침까지 어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 고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략]**

채용 인원의 80%는 사전에 리스트를 통해서 설계하고 20%만 일반 응모 청년을 뽑으라고 지시합니다. 직원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며 항의하자 자신의 방에서 보자고 합니다. **[중략]** △△문화재단 노조원들은 이○○ 사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③ △△문화재단 공무원 노조원이 이○○ △△문화재단 사장을 불법 채용 청탁과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 2019년 청년 뉴딜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인적사항이 담긴 리스트를 직원에게 전달해 채용인원의 80%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직위를 활용해 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함께 고발장에 포함됐습니다.

④ **[전략]** △△ □□□□센터 정문에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피켓에는 승진에 눈이 멀어 선거운동을 한 직원들도 당장 조사하라, 낙하산 인사 조사하라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센터 노조는 이○○ △△문화재단 사장이 △△청 기획관 시절부터 채용 규칙을 바꿔가면서 자기 사람 심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출신 직원을 다수 채용했고 근속기간을 무시한 편법 승진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가입을 권유했고 지난 지방 선거운동을 위해 무리하게 재단 사업을 운영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장이 지난 20XX년 △△ 기획관 당시 청년 일자리 사업 과정에서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전에 작성된 인적사항이 담긴 리스트를 직원에게 건네며 여기서 전



채용 인원의 80%를 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문화재단 사장 정당 가입 강요 보도 등 관련

**본문내용:** 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센터 노조가 이○○ △△문화재단 사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특정 정당 권리당원 가입 강요의혹, 채용 부정청탁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사장은 “△△문화재단의 모든 인사는 정해진 인사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특정한 인물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 또한 이 전 사장이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구의회가 재단 신규문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에 대해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뿐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이 전 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은 일부 직원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20XX년 청년뉴딜사업의 예산을 받은 상황에서 홍보부족으로 미달될 것이 확실하여 △△ 내 대학교 및 예술가들에게 홍보해 지원자 추천을 받은 것이지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끝.

### 보도방법

-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뉴스>서울면 기사목록 상단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각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한다.

### 동영상 플랫폼 조치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영상 하단 설명란(첫 고정댓글)에 반론보도문을 링크한다.

**반론보도 사례 09 < 2022경기조정191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단체(종교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한 기독교 교단이 특정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종교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기독교 교단이 신청인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결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종교단체는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 선교사가 자신 단체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반복되는 거짓말과 사실왜곡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종교단체는 중국인 선교사를 파키스탄에 파송한 사실이 없으며, 조정대상보도에 언급된 인도 불교사원에서의 찬양 기도 등 논란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바 없음에도 피신청인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인해 종교단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조정대상보도는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거나 보도가 이루어진 사안이며, 종교단체의 이단 여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는 게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중재부는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는 논점을 반론보도로 게재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 종교단체는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신청인 종교단체가 심각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타 매체(인터넷신문) 보도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양 당사자가 네이버, 다음, 구글의 통합검색 결과에서 해당 보도가 제외되도록 기사에 대한 ‘웹 크롤링(데이터 수집)’ 비허용 조치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되었음



## 조정대상보도

○○○○○○○○○ △△(총회장 김□□ 목사)이 20XX년 X월 XX일 열린 총회에서 ◇◇◇(최☆☆ 본부장)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에 대한 논란은 20XX년 ☆☆ ▽▽측의 예의주시·참여자체 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줄곧 주요 교단의 논점이 돼 왔으나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결의한 것은 ◎◎ <<이 최초이다. [중략]

반복되는 거짓말과 사실 왜곡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20XX년 X월 인도 ▷▷▷▷ 불교사원에서 찬양하며 기도했던 일로 사회적 공분을 사자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사실관계와 정황이 제시되고 나서 인정한 점 △20XX년 X월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 선교사가 ◇◇◇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중국 정부가 ◇◇◇임을 확인하고 한국선교사들까지 추방하는 빌미로 작용한 점 △20XX년 X월 X일 ♪♪♪♪♪가 ♡♡♡♡가 ◇◇◇에 대해 2년간 회원자격과 활동을 정지했다고 기사화하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으나 사실이었던 점 △최●● 본부장의 저서 '▲▲▲▲▲'를 회수하고 출판 금지한다고 했으나 동일 내용을 담은 '■●●■ ■■'라는 만화 형식의 책이 판매됐고 문제가 되자 '저자가 최☆☆ 본부장과 상의 없이 출간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이었다. 결국 사과하고 고치겠다는 ◇◇◇측의 개선 의지는 논란을 피해하려는 미봉책일 뿐 진심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교정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측은 평가한 것이다. [후략]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 <<, 교단 최초로 ◇◇◇ 이단 규정」 관련

**본문내용:** 본 인터넷신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 20XX년 X월 인도 ▷▷▷▷ 불교사원에서 찬양하며 기도했던 일로 사회적 공분을 사자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사실관계와 정황이 제시되고 나서 인정한 점 △ 20XX년 X월 파키스탄에서 피살된 중국인 선교사가 ◇◇◇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중국 정부가 ◇◇◇임을 확인하고 한국선교사들까지 추방하는 빌미로 작용한 점 △ 20XX년 X월 X일 ♪♪♪♪♪가 ♡♡♡♡가 ◇◇◇에 대해 2년간 회원자격과 활동을 정지했다고 기사화하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으나 사실이었던 점 △ 최●● 본부장의 저서 '▲▲▲▲▲'를 회수하고 출판금지한다고 했으나 동일 내용을 담은 '■●●■ ■■'라는 만화 형식의 책이 판매됐고 문제가 되자 '저자가 최☆☆ 본부장과 상의 없이 출간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 ◇◇◇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사실왜곡이 문제가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교회 측은 “불교사원에서 찬양한 일로 인터뷰 할 당시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맞고, 중국인 선교사를 파키스탄에 파송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은 ♡♡♡♡로부터 사역지도를 받았고 그 기간에 회원으로서 자숙한 것이지 자격이 정지된 것은 아니다. 나아가



‘■■■■■ ■■■’는 ◇◇◇선교회와 전혀 무관하게 출판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게재시점부터 12시간 동안은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한다.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제1항의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최초 게재시점부터 12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보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반론보도 사례 10 < 2022서울조정2021/2022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아파트 배관 공사 부실 논란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도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낡은 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100억 짜리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부실투성이'라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공사를 따낸 업체가 동대표들에게 10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안하는 등 '뒷돈이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단체는 아파트 급수급탕배관시설의 노후화로 진행 중인 공사가 '부실투성이'라는 주민의 제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피신청인 언론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는 공사 현장을 자료화면으로 방송해 부실 공사 현장인 것처럼 왜곡하고, 배관공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측 간에 뒷돈이 오간 것으로 허위 보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 차단과 함께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제보자 진술, 현장 취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한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한 반론보도는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양측이 보도문안과 이행방법을 협의해 반론보도 할 것을 권고했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피신청인 방송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영상에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표시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①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낡은 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100억 원짜리 공사였는데, 공사를 마친 업체가 동대표들에게 리베이트 10억 원을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중략]

지난 5월부터 녹물이 나오는 낡은 수도 배관을 전부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투성이라는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계량기, 제어기, 펌프 같은 중요한 부품들을 교체하지 않고, 낡은 걸 재사용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온수 계량기는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재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물에 담가 놔는데, 이물질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정밀한 회전부가 막히기 때문에…”] [중략]  
그런데 이 공사에 뒷돈이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전 임원. 입찰 과정에서 공사 업체가 돈 봉투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중략]  
한 씨는 돈 봉투를 돌려주고, 회장과 다른 임원들에게 이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사업을 방해하는 거냐는 타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10억 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입주자대표회의 전 임원 : “현재 저희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 △△이라는 □□□ 사장이 직접 왔습니다. 저한테 얘기가 잘되면 10억 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5억 정도 갖고 나머지는 나눠서 써라’라는 식의 얘기를 했죠.”]

한 씨는 거절했지만, 입찰 결과 결국 이 업체와 다른 업체 한 곳이 함께 공사를 마쳤습니다.

### [후략]

② 이런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간 게 정말 사실일까, 저희가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들과 증언들을 확보했는데요. 입찰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략]

◇◇◇◇◇아파트의 배관공사 입찰공고입니다. 최근 5년, 1천 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네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중략]

그런데 업체들이 써낸 가격이 좀 이상합니다. 마치 서로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격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중략]

로비와 담합이 만연해 있다는 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중략]

주민들 일부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어서, 진실은 수사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100억 공사에 “10억 원 주겠다” - 동대표들 뒷돈 의혹 진실은?>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100억 공사에 “10억원 주겠다” - 동대표들 뒷돈 의혹 진실은>이라는 제목 등으로 “☆☆☆ ◇◇◇◇◇◇▽▽아파트의 배관공사가 부실투성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뒷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보도에서 공사가 부실 투성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의 현장을 보도한 것이고 실제 뒷돈을 받은 임원들도 전혀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계량기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공사에 포함된 부분도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의 <뉴스홈>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24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들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단,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들을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 사항을 전송한다.

###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보도 영상 앞부분에 반론보도문을 자막 처리하여 게시하고, 영상 설명란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한다.

**반론보도 사례 11** 2022서울조정2200·2201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기사수정)

시민단체 성명 발표 등을 인용한 특정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표현한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의 반론을 게재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의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허위보도’의 사례로 신청인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 등을 인용한 특정 언론매체의 보도를 언급하고, 해당 매체를 상대로 모 노동조합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반론보도가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시민단체는, 피신청인 언론사가 ‘신청인 단체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취지의 모 노동조합 측 인터뷰와 함께 신청인 단체의 입장을 허위라고 단정 보도해 사회적 평판이 저해됐다고 정정보도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신청인 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모 노동조합 측의 인터뷰는 논평에 해당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반론보도와 조정대상보도 제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중재부는 양측이 문안을 협의해 반론보도 게재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본문의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X월XX일 자)와 △△△△△△(X월XX일 자)는 ‘□□노조가 특정 정당과 협약을 맺고 선거 승리를 위해 기여했다’·‘□□노조가 선거가 끝난 뒤엔 주요 공공기관·기구에 직접 참여해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해 왔다’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이후 이들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노조는 “◇◇◇◇◇◇연대(☆☆☆☆☆☆연대)가 내놓은 주장이 사실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하거나 □□노조 반론조치 보장하지 않은 보도였다”며 “△△△△△△는 엉뚱하게도 조정 대상 문장이 담긴 문단을 통째로 지운 채 언론중재위에 출석했다. 기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노조가 방송장악? 언론중재위 결론은」 관련

**본문내용:** 본지 위 제목의 보도에 대해 ☆☆☆☆☆☆☆연대 측에서는 “□□노조의 주장은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과 □□노조가 개정하려는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법의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사 사장을 선출하는 위원 절대 다수가 친□□노조와 친▽▽당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노출시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 기사 수정사항

### <조정대상보도 주제목 수정>

(수정 전) 언론노조가 방송장악? ‘허위보도’ 결말은

(수정 후) 언론노조가 방송장악? 언론중재위 결론은

###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수정 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수정 후)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반론보도 사례 12** 2022서울조정2309/2310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회사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벤처회사가 불법로비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권을 취득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 후반에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회사가 매출을 부풀려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택시 광고판 독점 사업권을 따낸 의혹이 있고, 회사 대표는 지원받은 정부 자금 일부를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브로커를 통해 불법 로비를 한 정황도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이유**

신청인 회사는 허위로 매출과 기술인력 현황을 부풀리거나 브로커를 통해 불법 로비를 한 사실이 없고, 회사 대표가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의 불법 로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부고발자와 경쟁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편파 보도해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방송과 방송사 홈페이지,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 언론사는 방송 분량의 한계로 신청인 회사의 해명을 더 길게 보도하지는 못하였으나, 해당보도는 내부고발자의 증언, 검찰 수사 상황 및 진술조서, 관련 전문가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제보의 신빙성, 검찰 수사 진행 여부 등과 관련해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향후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할 것을 권고했고, 내부 논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에는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유튜브 채널 조정대상보도 영상 후반에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을 추가하기로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① 요즘 서울에서 택시 표시등 대신 디지털 광고판을 단 택시들, 꽤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가 2년 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천 대 넘는 택시가 이런 광고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탐사팀 △△△가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벤처 회사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분식 회계로 매출을 부풀려 사업권을 따내고, 지자체를 상대로 로비를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중략]**

해당 시범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곳은 국내 한 벤처 회사.

○○시는 20XX년 이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시범 사업 기간도 3년 더 연장해 줬습니다. **[중략]**

취재진이 입수한 이 회사 내부 문서입니다.

○○시 담당자들이 애초 해당 사업에 부정적이어서 “다양한 로비 루트 확보 검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 모 씨/내부고발자 : 각종 브로커를 썼고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인허가를 공적으로 따냈던 ... ]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략]**

허위 매출로 실적을 꾸미고 기술인력 현황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 모 씨/내부고발자 : 저 같은 경우는 문과를 나왔고 그런데 연구원이 원래는 되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내용을 넣었던 겁니다. 실제로 연구 일을 한 적도 없고요.]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 회사 임모 대표는 부풀린 사업계획서로 따낸 정부 자금 일부를 아파트 전세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범 사업 운영업체는 “가공된 매출이나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불법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② 서울시의 택시 디지털 광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 벤처 회사가 매출을 부풀리고 ○○시에 로비를 한 의혹,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에서도 같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중략]**

이 회사 관계자가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심사위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모 씨/내부고발자 : 저는 심사위원을 심의 전에 두 차례 만났고, 대표이사는 심의 전에 심의위원과 수차례 통화하고 수차례 만났습니다.]

해당 심의는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심의 이후 이 회사는 해당 위원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7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해당 위원은 취재진에게 연구 용역비를 받은 거라고 해명합니다. **[중략]**

하지만 이 회사 내부 고발자 주장은 다릅니다.

[김 모 씨/내부고발자 : 심사위원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실제 이 회사가 ○○시 심의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서에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심의위원이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통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 측은 “불법 로비는 없었고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조정성립사항

###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디지털 광고판 단 ○○ 택시... 그 이면엔 ‘로비 사슬’> 등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시 디지털 광고판 시범사업 독점권을 따낸 벤처 회사가 연구원 허위등록 및 분식회계를 통해 기술인력과 매출을 부풀렸고,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로비를 한 정황이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대표이사의 전세금으로 유용한 의혹이 있어,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벤처 회사 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기술인력(연구원)을 정식 등록하였고, 매출처와 매입처에 모두 기재되어있는 회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금형 및 원재료로 택시탑을 제조하여 다시 납품하는 업체들로 분식회계와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가 보도한 ○○시와 □□시에 대한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 근거로 보도한 내부분건은 광고협회 및 방송협회 관계자의 택시 디지털 광고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2018년 작성한 것으로 20XX년 지자체 입찰과는 관계가 없고, 대표이사의 아파트전세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입했으며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함께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활자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방식과 동일하게 하며,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하되, 활자 및 크기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 동영상 플랫폼 조치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① 및 ② 동영상 후단에 CG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을 추가한다.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